

# 거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· 공제등가입조례안

의안 번호	2003~5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	2003. 2.
제출자	거창군수

## ■ 제정이유

-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·공포(대통령령 17867호 2002. 12. 31)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0조(보험·공제등가입)에 명시한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가입 기준을 마련키 위함.
- 인감업무에 대해 보험·공제등에 가입 함으로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

## ■ 주요골자

- 보험의 가입
  -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, 보험금액은 최저 5,000만원이상으로 함.(안 제3조)
- 보험료의 지급
  -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함. (안 제4조)
- 변상조치
  - 변상시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 제2항)

## ■ 제정근거

-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

## 거창군 조례 제 호

# 거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가입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인감업무담당공무원)**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포함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**제3조(보험의 가입)**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보험금액은 최저 5,000만원이상으로 한다.

**제4조(보험료의 지급)**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**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**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**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별지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